

第281回國會
(臨時會·閉會中)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5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3月26日(木)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석면피해보상법안
11.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12. 석면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3. 석면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
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審査된案件

-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강성천·공성진·권영세·김성수·김성태·박보환·박준선·안상수·원희목·유재중·이애주·이한성·임동규·임두성·정두언·정미경·정옥임·정태근·조윤선·주광덕·홍일표 의원 발의)(계속) … 4
-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조정식·홍희덕·양승조·김재윤·김상희·최영희·강창일·전혜숙·박기춘·장세환·안규백·추미애 의원 발의)(계속) … 4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 6
-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 6
-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 6
-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 6
- 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 6
-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강성천·정진섭·정해걸·신상진·송훈석·김우남·배은희·정갑윤·홍장표·이춘식 의원 발의) … 6
- 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정해걸·박대해·진성호·김성태·강성천·이명규·정갑윤·김성조·안형환·박민식·이진복·홍장표·송훈석·윤석용 의원 발의) … 6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7
- 10. 석면피해보상법안(양승조 의원 발의)(양승조 의원 외 81인 발의)(계속) … 17
- 11.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박민식·조원진·정갑윤·김동성·이윤성·이화수·허범도·손범규·황영철·박대해·정진섭·강성천 의원 발의)(계속) … 17
- 12. 석면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심대평·류근찬·임영호·김창수·박상돈·이명수·김용구·이영애·이재선·박선영·이용희·김낙성·이진삼·변웅전·조순형·이희창 의원 발의)(계속) … 17
- 13. 석면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양승조·김재윤·김춘진·유원일·홍희덕·최문순·홍재형·박은수·노영민·강기정 의원 발의) … 17
- 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 1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송민순·이인기·원희룡·황영철·이상민·안상수·권영진·고승덕·정영희·홍일표·이범래 의원 발의) … 24
- 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강승규·강석호·권영진·권택기·나경원·신상진·안형환·안효대·원희룡·이달곤·임동규·조해진·한선교 의원 발의) … 24
-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19.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2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김우남 · 강성천 · 송훈석 · 조진형 · 박순자 · 정진섭 · 신상진 · 박민식 · 이명규 · 정해걸 · 정갑윤 · 의원 발의)	29
2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 · 이경재 · 정갑윤 · 박종희 · 이계진 · 이명규 · 김태원 · 구본철 · 윤석용 · 허범도 의원 발의)	29
2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2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25.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 · 이경재 · 정갑윤 · 구본철 · 김태원 · 김효재 · 박준선 · 백성운 · 이달곤 · 이화수 · 허범도 의원 발의)	33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 · 이경재 · 정갑윤 · 구본철 · 김태원 · 김효재 · 박준선 · 백성운 · 이달곤 · 이화수 · 허범도 의원 발의)	33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정해걸 · 박대해 · 진성호 · 김성태 · 강성천 · 정갑윤 · 안형환 · 홍장표 · 송훈석 · 김재윤 · 윤석용 · 박준선 · 조원진 · 원희목 · 김태원 · 이경재 · 조해진 · 정진섭 의원 발의)	33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4
30.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 · 김영진 · 이진삼 · 이범래 · 김태원 · 김동철 · 원희룡 · 구본철 · 김소남 · 정병국 · 박종희 · 신상진 · 김희철 · 이달곤 · 정양석 · 김재윤 · 박상돈 · 이화수 · 김충조 · 강창일 · 신학용 · 조전혁 · 장광근 · 이성현 · 이윤성 · 조영택 · 윤상현 · 고승덕 · 강명순 · 최인기 · 강성천 · 조진형 의원 발의)	35
3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최철국 · 김재균 · 강창일 · 김영진 · 강기정 · 양승조 · 김춘진 · 우윤근 · 주승용 · 전현희 · 이광재 · 백원우 · 최규성 의원 발의)	35
32.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 · 강창일 · 김상희 · 김우남 · 김재균 · 김창수 · 박지원 · 송민순 · 안민석 · 양승조 · 원혜영 · 이광재 · 이미경 · 이용경 · 이용섭 · 조배숙 · 천정배 · 최문순 · 홍희덕 의원 발의)	35
33.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 · 유성엽 · 김재윤 · 강기갑 ·곽정숙 · 이정희 · 권영길 · 최문순 · 김성수 · 원혜영 · 송훈석 의원 발의)	35
34.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5
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박대해 · 박은수 · 전현희 · 문학진 · 변재일 · 이석현 · 양승조 · 안민석 · 김영진 · 최영희 · 천정배 · 송영길 · 홍희덕 · 강기정 · 이용경 · 장세환 · 김재윤 · 안규백 · 이성남 · 이춘석 · 원혜영 · 이정희 · 최문순 의원 발의)	38
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박대해 · 최구식 · 유재중 · 홍장표 · 안상수 · 강성천 · 손숙미 · 이달곤 · 홍희덕 · 박민식 · 서상기 · 황우여 · 김정훈 · 허태열 · 정영희 · 한선교 의원 발의)	38
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10시47분 개의)

○**委員長 秋美愛**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입법조사관 방건환** 입법조사관입니다.

2009년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발생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입법조사관의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준표 위원이 사임하시고 이두아 위원이 보임했습니다.

이두아 위원님, 보임을 환영하면서 잠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아 위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받은 이두아 위원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환노위에서 일하게 되어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법률가로서 일한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우리 위원님 모두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임 전문위원은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것이며 외부 전문가 공채로 선임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입니다.

(직원 인사)

먼저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심사하는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은 제4차 회의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김상희 의원으로부터 석면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옴에 따라 여야 간사 간에 안건을 추가하기로 하여 당초 12건에서 13건으로 늘어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환경부 소관 법안 심사 대상 안건이 정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만 오늘 간사회의를 통해 총 24건의 노동부 소관 법안을 심사하기로 간사 간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간사 간 협의가 조금 늦게 이루어졌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대체토론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정법률안의 원문과 제안 설명문은 노트북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이정선 ·

강성천 · 공성진 · 권영세 · 김성수 · 김성태 · 박보환 · 박준선 · 안상수 · 원희목 · 유재중 · 이애주 · 이한성 · 임동규 · 임두성 · 정두언 · 정미경 · 정옥임 · 정태근 · 조운선 · 주광덕 · 홍일표 의원 발의)(계속)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 · 조정식 · 홍희덕 · 양승조 · 김재윤 · 김상희 · 최영희 · 강창일 · 전해숙 · 박기춘 · 장세환 · 안규백 · 추미애 의원 발의)(계속)

(10시52분)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정선 의원과 원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제4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이미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들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입니다.

이정선 의원님이 발의한 법률을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보증 기간이 지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기 환경 측면에서는 개선 효과가 있겠으나 그 효과에 대비하여 사업용 트럭 소유주,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생계에 피해는 어떠한지, 그 영향에 대해서 환경부는 검토한 적이 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존경하는 홍희덕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목적은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상별로 특히 서민 생계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보상 제도를 만들어서 조치를 해 드림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희덕 위원** 요즘 나오는 경유차 엔진이 좋아서 괜찮지만 트럭 화물의 경우는 보증 기간이 지난 차를 소유한 화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불편함이나 노동 여건 때문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무화가 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국고 보조를 해도 장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출퇴근이나 레저용이면 당연히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저감장치가 소음이 크게 발생한다라든지 엔진 출력이 낮아진다라든지 하면 장시간 운전해야 하는 생계형 노동자의 경우 고려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감장치를 기피하는 경향을 노동자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의견을 제출하는데 일단 화물연대라든지 관련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이에 따른 사업용 특정 경유차 소유자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고 대책 마련도 세심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비록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미세한 불편이 가구별로 또는 대상자별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홍희덕 위원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더 수렴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는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다른 위원님……

강성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천 위원** 장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혜영 의원이 발의하신 수도권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이 폐차나 수출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부착된 저감장치나 개조된 저공해 엔진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강성천 위원** 그런데 이 법안의 부칙 2항에 따

르면 법 시행일 이전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되었고 반납 업무도 폐차업자나 수출업자가 대행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기 때문에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저희도 존경하는 우리 강성천 위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강성천 위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이 약 36만 대입니다. 국고에서 지원한 예산이 58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옳습니다.

○**강성천 위원** 만약에 이 법안에 경과 규정을 두게 되면 기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36만 대의 저감장치 반납에 대해서 보증기간 관계없이 반납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법 개정 전과 후로 구분하여 적용되는 수도권 특별법 간에 법률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특정한 취지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박대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해 위원** 박대해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성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이정선 의원님의 안과 원혜영 의원님의 안은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배출가스저감 부착장치를 반납하도록 하는 안으로 동일합니다.

장관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데 차량 소유자 개인이 돈을 부담하지는 않지요? 전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박대해 위원**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원 예산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한 것에 대해 폐차 및 수출 등으로 등록 말소의 절차를 거칠 때 이를 회수하도록 하여 국가 예산 낭비를 막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록 말소 현황을 보면 전체 등록 말소 차량 3만 4000여 대 가운데 94.4%인 3만 2000여 대가 보증기간 내에 폐차되거나 수출이 되었습니다. 기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국가 예산으로 부착을 해 주니까 폐차해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심각한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 안대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면 지금까지 정부가 장착해 준 장치에 대해 회수를 못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여과장치의 경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촉매체로 사용되는 장치 내의 백금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70만 내지 120만 선에 이르고 다른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도 장치의 상태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장치를 회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가 예산을 절약하고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면 이 법의 개정 취치가 퇴색이 되고 혼란을 초래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강성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부칙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환경부의 입장은 어떨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동의합니다.

○**박대해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강성천 · 정진섭 · 정해결 · 신상진 · 송훈석 · 김우남 · 배은희 · 정갑윤 · 홍장표 · 이춘식 의원 발의)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강성천 · 정진섭 · 정해결 · 신상진 · 송훈석 · 김우남 · 배은희 · 정갑윤 · 홍장표 · 이춘식 의원 발의)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강성천 · 정진섭 · 정해결 · 신상진 · 송훈석 · 김우남 · 배은희 · 정갑윤 · 홍장표 · 이춘식 의원 발의)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강성천 · 정진섭 · 정해결 · 신상진 · 송훈석 · 김우남 · 배은희 · 정갑윤 · 홍장표 · 이춘식 의원 발의)

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강성천 · 정진섭 · 정해결 · 신상진 · 송훈석 · 김우남 · 배은희 · 정갑윤 · 홍장표 · 이춘식 의원 발의)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강성천 · 정진섭 · 정해결 · 신상진 · 송훈석 · 김우남 · 배은희 · 정갑윤 · 홍장표 · 이춘식 의원 발의)

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정해결 · 박대해 · 진성호 · 김성태 · 강성천 · 이명규 · 정갑윤 · 김성조 · 안형환 · 박민식 · 이진복 · 홍장표 · 송훈석 · 윤석용 의원 발의)

(11시01분)

○**委員長 秋美愛** 다음은 이화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모두 7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화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和洙 議員**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안산 상록 갑 이화수 의원입니다.

오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 27일 행정안전부가 의사결정의 속도가 떨어지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 낭비를 초래하면서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총 7건의 개정안에 개별로 규정된 위원회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위원회들로 실제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규정된 7개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그동안 수행해 왔던 기능을 환경부 내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통합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들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이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이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3항부터 9항까지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각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 황사대책위원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등 6개의 위

원회는 각각의 법률에서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중앙환경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적 성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법문상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어도 그 실질은 자문기구이므로 이들 위원회와 그 기능을 대신하려는 중앙환경자문위원회의 기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문의 문언을 중시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보면 동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신속성 제고, 책임행정의 구현, 예산 절감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장관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별다른 심의 절차 없이 업무를 집행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보면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동위원회의 심사도 임의적인 자문 절차로서 중앙환경자문위원회와 그 기능이 다르지 않은 것이므로 위원회를 폐지하여 예산 절감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이 반드시 법문의 문언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도 심의기구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자문기구 성격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은 심의기구로 정하고 있고 그 운영은 자문기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입법 시 각종 정부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로 할 것인지, 자문기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입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는 그 법적 성격을 자문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어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나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아니한 실

정입니다.

따라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앙환경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볼 때 별도의 위원회 설치에 따른 예산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하의 개별적인 법에서의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秋美愛**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법률안들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위원님!

○**홍희덕 위원** 홍희덕 위원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분과별로 그렇게 해서 뭐……

○**환경부장관 이만의** 분과별 위원회가 있고요 또 전체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의 핵심은 전체위원회이고 전체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홍희덕 위원** 환경자문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환경정책·자연보전·대기보전·수질보전·상하수도·폐기물자원·지구환경보전의 분야별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홍희덕 위원** 위원회 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자문위원회의 분과별 운영 활성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도 보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존경하는 우리 홍희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하면 굉장히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또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고, 또 바라시는 대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실효성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자문위원회에 포괄되지 않는 분야가 있거든요? 가령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경우가 그런데요. 어떻게 환경자문위원회에서 이것 대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은 전체회의에서도 다룰 수 있는 주요 항목입니다. 이것은 여러 정부 기구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국민 일반과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된 분과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최종 결정은 전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리고 요즘 낙동강 1, 4-다이옥산 파동 등으로 알 수 있듯이 정부에서도 수질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나 환경부가 강조해 왔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동안 여러 위원회의 운영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와 같은 위원회 폐지에 관한 사항이 대두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두겠다고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전문가 확보가 어렵든지 또는 위원회 운영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등 그동안 특별한 소이가 없어서 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해 왔던 탓에 정비 대상 위원회에 모두 포함된 것을 좀 아쉽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생태에 관한 전문성이 정책에 크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홍희덕 위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관한 제도적 발전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따로 설치할 필요를 특별히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이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시행착오 과정을 겪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입 이후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서 잘 안 된다고 무턱대고 없애 버리면 정부정책의 사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전문성 제고에 문제가 생기고 퇴보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

다.

그래서 이렇게 단번에 정비하기보다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치면서 추진하였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우리 존경하는 홍희덕 위원님 말씀에 총체적으로는 사실 공감합니다. 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참여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위원회가 됐든 또는 협의회가 됐든 사안에 따라서 협의 기구를 두거나 또는 협의의 기회를 늘림으로써 정책 수립의 민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 하는 정도의 사안이 발생하거나 또는 저희가 그것을 절실히 느낄 때는 다시 환경노동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위원회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상정된 법안 7개 모두가 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거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재윤 위원** 그런데 이 7개의 위원회는 각 법마다 그 필요성과 그리고 또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재윤 위원** 그런데 이번에 7개 위원회를 폐지하는데 환경부는 이것 폐지하는 것을 동의하는 건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환경부로서는 아까 존경하는 홍희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필요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환경부가 그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해서 결국 정비 대상으로 되었던 점은 매우 아쉽고 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번에 총괄적으로 위원회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서 근거가 사라진 위원회라 할지라도 그 기능을 다시 필요로 하는 사안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또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없다 하더라도 사안이 발생해서 처리하는데 합의적 의사결정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 또는 협력을 필요로 할 때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나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환경부의 판단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가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합하는 문제인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통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통폐합되는 위원회 가운데 6개 위원회는 심의 조정을 하는 위원회거든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재윤 위원** 보면 황사대책위원회도 황사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황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잔류성유기물질위원회도 역시 보면 심의를 거쳐서 하여튼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제품환경성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상품위원회도 그렇고.

이렇게 심의라든가 기능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다가 통합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자문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다루고요,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나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전문가 영역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꼭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번에 폐지되는 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은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소요 예산을 지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중대하고 것처럼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둘 그러한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 쪽에 보고를 드려서 고견을 들어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모든 걸 한 군데에 집결해야만 꼭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같은 데로 이렇게 다 묶어놓으면 오히려 이게 부실화될 우려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전문가들이 사안을 특수한 영역으로 다룬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전체 위원회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재조율하는 과정을 보니까 현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이 매우 바람직한 모델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면서 아쉬운 점이 생기게 되면 좀더 정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 올렸습시다마는 현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분과 운영을 통해서 폐지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살려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몇 번 운영 과정을 보게 되면 충분히 오늘 폐지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시다마는 다시 한번 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일정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 분석해서 보고도 드리고 공감의 형성되면 그때 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기회의 문은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오늘 특히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수질 관련 최상위 계획을 점검하는 심의기구인데요. 이 부분은 적어도 환경부가 존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지금까지 이 수질과 수생태 분야가 사실상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안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질과 수생태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 여러 가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사안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또 저희 환경부나 환경부 산하의 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심포지엄, 포럼, 패널 등 방식을 통해서 바로 법률에 근거 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면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지금 황사대책위원회도요, 중국의 황사문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전역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해야 될 문제까지도 생기는데 이걸 과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저희도 사실 오늘 이상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황사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간부 또는 실무진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국민적 인식으로 봐 가지고 황사대책위원회 같이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존치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황사가 발생하거나 또는 예견될 때마다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관계기관과 연관을 갖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채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황사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구체적으로 국민의 어떤 권리·의무 또는 국가 간의 책임 등과 연관된 사안이 주어지면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오늘 위원회 폐지는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매우 없고 또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제기되었지만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을 해 놓고 위원회 구성마저도 제대로 안 해 놓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부실한 점, 이런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위원회의 폐지를 앞으로 민주성이라든지 내지는 효율성·전문성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되 위원회의 필요를 다시 절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또 보고를 드림으로써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가축분뇨정책자문위원회는 농식품부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재윤 위원** 이 부분도 농식품부랑 협의절차가 좀 거쳤나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최근 들어서 바이오에너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면서 가축 분뇨에 관한 에너지화 내지는 다각적 이용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가축 분뇨에 관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 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어찌됐건 에너지로서의 효율

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방류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에너지화 하는 쪽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는 지적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노력을 해 보고 만약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보고 드리고 협의 올리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박준선 위원님!

○박준선 위원 지금 이화수 의원님의 발의로 이렇게 7개 위원회 폐지가 제안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금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위원회 구성이 법적으로 의무가 되어 있는데 구성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부 각 부처 산하에 있는 위원회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 이것이 과연 현 정부의 책임행정과 맞느냐, 효율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추구해야 되는 정부에서 위원회를 남설하고 그리고 각 부처에 각 부과별로 그리고 실국별로 위원회를 남발해서 그리고 쓸데 없는 비용만 들이고, 회의비용만 들이고, 그런 기본적인 위원회의 만능주의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위원회를 정비하는 계획이 시작됐고, 환경부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도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의 추상적인 존재 자체의 가치가 무의미하다, 기능도 무의미하다라는 데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을 만들 때마다, 위원회 설치하는 쪽으로 안을 냈다가 실제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위원회 구성마저도 미루거나 또는 지금까지 장기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할 실질적인 필요가 별로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서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의 정비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위원회 정비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것으로 보고 또 어떤 위원회를 없앨 것인가에 관하여 환경부로서도 동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비를 하면서 앞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떤 전문가의 채널이 필요할 것인지 등이 제기가 되면 그때 가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박준선 위원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위원

회가 아까 지적하신, 우리 흥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데는 큰 기여를 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위원회의 결정, 형식적인 결정에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역기능도 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박준선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면 그다음에 각 부처의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의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위원회들의 남설은 이제는 시대적으로 없앨 때가 됐다 그리고 그것을 통합해서 정말 장관이나 또는 공직자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중요한 사안에 의해서, 이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의견 수렴절차 그다음에 갈등구조의 해소절차 등등을 위해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에 좀 재량범위를 넓히고 그다음에 유연성을 좀 갖추고 이런 의미에서 통합하는 것이 아닌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위원회 운영을 해 오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위원회는 남겨두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발전적으로 우리 환경보전 위원회가 상당히 큰 규모의 위원회로 통합 내지는 조정이 되면서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개별법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을 이미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또 민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정부의 공직조직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법을 만들어 놓고 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 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하는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운영효과가 없다면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 운영경비 등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거듭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환경보전자문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그리고 전체위원회의 연계 운영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자문 내지는 협의적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봐서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고, 환경부로서도 이미 폐지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제에 좀 지

적을 하겠는데 역시 각 법률별로 산재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통합해서 위원회를 두고, 그 분과위원회를 따로 두고, 그렇게 형식적인 어떤 위원회의 모양만 바꿀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운영을 지금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콤팩트(compact)하게 운영하는 그런 것을 우리 장관께서 마인드를 갖추셔야 된다, 이번 기회에.

그리고 민주성을 제고하는 그런 선기능은 살리고 그다음에 책임정치와 좀 동떨어져 있는 위원회를 하나의 책임 방패막이로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 형식적인 절차로 이용하려는 그런 것들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법률에 설치되도록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정책의 경우에는 특히 전문가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정책결정을…… 심의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자문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아무래도 공공기관 내지는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보완하자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김상희 위원** 보완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사실은 법률적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수많은 방식과 채널을 통해서 전문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수많은 채널과 방식을 통해서 하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환경부의 48개 위원회 중에서 14개만, 34개를 폐지하고 14개 위원회만 존치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상희 위원** 그리고 이중에서 법적으로 강제했던 위원회를 이번에 7개 법률개정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김상희 위원** 그래서 지금 48개 위원회 중에서도 법률로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정부의 뭐랄까, 통치라고 할까요, 권력의 통치방식이 거버넌스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지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지금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사실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치기체로서 장려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우리나라에서도 거버넌스는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대답하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거버넌스의 기본이 자율성이니까 꼭 이렇게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많은 거버넌스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행정의 어떤 민주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그런 참여,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그렇지요.

○**김상희 위원** 그리고 특히 환경정책은 상당 부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그리고 기업에 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생활의 변화, 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도 협치가 상당히 강조되지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48개 위원회 중에서 다 폐지하고 14개 위원회를 남기고 그리고 그런 것이 필요해서 법적으로 강제했던 것까지도 지금 7개를 없앱니다.

저는 이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그리고 위원회가 남발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회 남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표현이 남발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정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

셨다시피 행정부가 깊이 반성해야 될 차원입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더군다나 법적으로 위원회를 뒤서 일반 전문가라든가 국민들의 참여하에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자문하도록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운용을 하지 않았습니

다.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하기로 해 놓고 4개는 아예 구성조차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사실 정부 책임입니다.

정부가 위원회 구성해서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높여야 됐음에도 불후하고 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반성해야 될 차원인데 반성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것이 폐지의 근거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한편으로는 정부가 반성을 하고 또 공직자들의 태도에 있어서 어느 정부 때나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전문성을 보강해 가지고 정말로 말해서 밤낮으로 연구를 해서 일을 해야 함에도 때로는 전문가 회의 몇 번 해 가지고 그것을 확정해 가지고 사안이 잘못되면 전문가들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을 만들면서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한 것은 민주성,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저희들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무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차원에서 그동안 운영 실적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전문가 참여가 아직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번 준비는 그러한 뜻에서 공무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일단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쪽에 없어지는 위원회의 기능 중에 필수적인 것은 포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그리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다 참여해 봤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이런 기능들을 다 이관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금 차관으로 되어 있지요? 차관이시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제가 잠깐……

○**김상희 위원** 잠깐만요,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장관님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님으로 바뀌었습니까? 다행이고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이관하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굉장히 몸집이 커집니다. 무거워집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아닙니다. 분과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분과위원회를 잘 운영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분과위원회를 잘 운영하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원회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낫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위원회를 그대로 두면 되는 겁니다.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성격과 지금 운영 방식과 또 이 위원회의 성격과 운영 방식은 다르고요.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오히려 가볍게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처나 이런 데에서 쉽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다 갖다 몰아넣으면 그게 오히려 더 무겁고 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남발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했던 그 위원회를 정비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실효성 있게 움직이는 것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자꾸 수…… 몇 개 위원회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위원회 개혁의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칫 이렇게 흐르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법적인 위원회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를 이렇게 폐지하면 이게 지금 또 다른 법, 다른 법에 이 위원회와 관련된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에 보면 황사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법률도, 몇 가지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문제의 조문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상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것도 저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 자문위원회의 역할 부분을 제대로 좀 법에 담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너무 편의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자문위원회이거든요. 그리고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지금 환경부에서 자율적으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 자문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기본법 개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관련된 다른 법 조문 정리도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7개 법안을 다 개정해서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다 폐지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다른 법률하고의 연계된 조문이라든가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정부 법안으로 하나 내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급하게 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이만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정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관 법령을 정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만약에 위원회를 폐지하게 되면 그 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안도 동시에 손질을 하는 것은……

○**김상희 위원** 맞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거나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회를 둔다고 해 놓고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대 손질을 가하고 새로 다 기하게 제기되는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는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종합적으로 우리들은 검토를 하겠다라는 오늘 제기되어 있는 이 위원회의 폐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로서는 부끄럽지만 위원회의 구성마저도 제대로 안 해 놓았거나 또는 법을 만들 때는 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지만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폐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은 정부법안을 이화수 의원님께서 지금 의원법안 발의로 대신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제가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지금 한 5개 법률의 법안 조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은 당연히 손질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법안을, 위원회 폐지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연관 법안의 개정안을 내 주셔야 종합적인 검토가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까지도 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있고 위원회 제대로 운영 안 하고 계시면서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의원이 개정법안으로 이것을 내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정법안을 발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환경부장관 이만의** 오늘 존경하는 이화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무의미한 또는 효과가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자고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개를 한꺼번에 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오히려 경의를 포함합니다.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이화수 위원님!

○**李和洙 委員** 제가 위원회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7개 위원회 중에 구성이 안 된 것이 지금 5개 그 다음에 회의도 1회, 황사대책위원회는 작년에 1회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도 2007년도 2회, 한 번은 출석이고 서면 그리고 2008년도에 서면으로 1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무의미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자는 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도 예산이 2008년도에 805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법안발의를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원안대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秋美愛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차관님한테 실무적인 것 좀 여쭙볼게요.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가 폐지되면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6개 분과위 안에 어디에 속합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지금 배경을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 개정 이전에 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차관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거의 의미 없는 자문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봐야 되겠다 해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장관님으로 올리고 거기에다가 한 20~30명 정도 전문가들을 별도로 위원으로 하고 그 밑에 분과위원을 뒀어 가지고 수질, 대기 등등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산만한 위원회를 종합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화수 의원님이 발의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법안을 정리할 필요도 있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법률안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뇨라든가 이런 분야는 정부 기능 중에, 환경부 기능 중에 대기나 수질이나 이런 분야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수질 쪽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전문가들이 중복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지금 전면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각 주제별로 되어 있는 세부적인 위원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지금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가 어디에 속하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수질 관련 분과……

○조원진 위원 그다음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는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것은 수질 쪽에서 일부 다루어지겠습니다마는 정책 파트…… 유해물질관리위원회로 통합되게 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지금 기존에 위원회가 있는 데에다가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건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쪽이 아닙니다.

○조원진 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아까 법안 올린 사항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폐지되면서 그 기능이 자동적으로 관련 위원회에서 커버되도록 그 관련 법을 정리를 할 것입니다.

○조원진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환경부차관 이병욱 아까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완적인……

○조원진 위원 전부 환경보전위원회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차관 이병욱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원진 위원 전문성이나 이런 필요한 것은 그 관련 위원회로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그 후속 조치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위원회인데 이게 없어지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다가 통합시키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기능 통합도 일부……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런 통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들은 충분히 보충이 될 수 있겠다, 저도 그것을 우려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委員長 秋美愛**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되기 때문에 정부법안으로 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지금 법에 규정된 7개 그것은 이번에 처리를 해 주시면 후속에 대한 준비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박준선 위원님!

○**박준선 위원** 장관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의 어떤 순기능 또는 장점들이 사라질까 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형해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니까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7개 위원회가 통폐합되고 또는 폐지됐을 경우에 나머지 위원회와 어떤 식으로 기능이 흡수되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그리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무엇이 폐지되고 어떻게 기능이 조정됐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이만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좋게 변화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토론 기능이 굉장히 약한 가운데…… 특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예를 들어 보면 2007년도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바로 그 다음해에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위원회를 둔 취지는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참여의 확대 또 김상희 위원님처럼 협치, 거버넌스에 맞추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의견과 여론 수렴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박준선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책임성을 다

하지 않고 그냥 위원회 한번 열어 가지고 얼렁뚱땅 포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잘못됐을 때 책임의 소재를 위원회에 돌린다든지 하는 무책임성 그런 것들로 가는 것, 그런 우려들을 불식하느냐 또는 민주성이나 이런 장점을 살리느냐 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불과 2년 전에 만들어 달라고 하고 만들어 주니까 한 번도 운영해 보지도 않고, 예산마저 주었는데 예산도 날리고 불용 처리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을 또 고쳐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사실은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정보 공개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적 정보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또한 그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주면서 그 장단점을 전문가들이 점검해 줄 수 있도록, 스크린해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왜 위원회가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지 없이 그냥 포장용으로 하는 경우가 되니까 위원회 설치할 의지도 없었고 해도 또 잘 안 되고, 심의기구라고 법률에 해 드려도 자문기구밖에 안 되고 격하시키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가장 맹점이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을 하든 거대한 프로젝트를 먼저 꺼내 놓고 소수의 관료 집단이 아무런…… 국회에 꺼내지도 않고, 국회에도 사후보고하는 거지요. 정당도 배제되어 있고 국회도 배제되어 있고 그래서 소수의 테크노크라시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언론에다 대고 대국민 공표를 하고 만약에 국회나 정당이 반대하면 ‘발목 잡는다’, ‘정치 논리다’ 그렇게 비방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정책 생성 단계, 프로그램 단계, 공표 이전 단계에서 부처 내부에서 걸러지도록 하는 그런 개방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아마 위원회를 설치하는 그 법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더 잘 운영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한 번도 운영 안 됐으니까 이것을 또 없애겠다 한다면 바로 그런 과거 시대처럼 먼저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 꺼내 놓고 소수 관료끼리 만지고 비공개된 상태에서 국민한테 공표해 버리고

끌고 가고 하는……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국민 수준에서는 국민들이 정보를 정부에서 개방하지 않아도 알게 되어 있어요. 모르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폐쇄성 또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 무책임성 또 관료주의 또 성과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제도 장치였는데 그것을…… 과거 시대 구 행정의 행태로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예산 쓰지도 않았는데 절감할 것도 없지요, 한 번도 구성도 안 했는데. 또 구성됐다 해도 안 열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고 했는데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별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정부 방침이 녹색성장에 방점이 찍어져 있다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심의기구는 살려서 정말 4대강 살리기의 생태가 보전되기 위해서 살리기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지도 정부 차원에서 미리, 우리 국회에 법안을 가지고 와서 도와 달라고 하기 이전에 제대로 심도 있는 그러한 것을, 전문가 모셔다 놓고 정책을 섬세하게 만져 가지고 갖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참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토론에 나온 위원님들의 여러 우려 사항을 좀 감안해 주셔서……

사실 다른 부처는 신속성, 효율성이 강조되지만 환경부는 환경은 한 번 망가지면 복원될 수 없기 때문에 좀 제동을 걸면서 좀 천천히 가고 민간의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국민의 여론이 환경부의 응원부대일 겁니다. 힘이 될 겁니다. 차관 회의나 국무회의에서는 힘이 약한 부처일지 모르지만 뒤에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부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개방하시고 좀더 많은 전문가 또 국민의 여론 수렴해 가면서 정부의 과속 질주를 막아 주는 역할이 우리 환경부에 있는 역할인 것인데 그런 점에서 환경부장관님께서 선뜻 위원회 폐지를 동의해 주셨다 하는 것은 조금 실망스러운 점 아닌가, 그래서 한번 더 그런 입장에서, 환경부 본연의 입장에서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토론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은 나중에 참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9항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57분)

○**委員長 秋美愛**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석면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번 제4차 회의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도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법률안들과 일괄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오늘 회의에 같이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석면피해보상법안(양승조 의원 발의)(양승조 의원 외 81인 발의)(계속)

11.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박준선·박민식·조원진·정갑윤·김동성·이윤성·이화수·허범도·손범규·황영철·박대해·정진섭·강성천 의원 발의)(계속)

12. 석면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권선택·심대평·류근찬·임영호·김창수·박상돈·이명수·김용구·이영애·이재선·박선영·이용희·김낙성·이진삼·변웅진·조순형·이회창 의원 발의)(계속)

13. 석면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양승조·김재윤·김춘진·유원일·홍희덕·최문순·홍재형·박은수·노영민·강기정 의원 발의)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피해보상법안, 의사일정 제11항 박준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권선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석면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석

면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승조 의원님께서서는 직접 제안설명하는 대신에 사정이 있으셔서 서면으로 제안설명해 주실 것을 미리 고지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준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의원**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용인시 기흥구 국회의원 박준선입니다.

오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은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석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석면광산이나 공장의 근로자와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제도가 미비하며 석면으로 인한 질병은 대부분 10~40년 정도의 긴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소멸시효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석면 건강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하며,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석면피해심의회를 설치하고 석면피해구제기구를 설립하는 등 석면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피해자와 유족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무쪼록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 등의 피해 구제를 위한 이번 제정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권선택 의원** 존경하는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석면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석면에 따른 일반 국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재보상법은 석면의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관만 한다면 국민의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석면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특별법안에서는 제1장 총칙에서는 특별법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환경부장관 소속의 석면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석면피해 보상 및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면피해보상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석면피해보상기금공단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피해보상에 대한 종류를 손실보상급여, 요양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등으로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석면오염지역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석면오염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 조사와 석면 오염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은 석면피해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석면피해보상재심사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제8장에서는 본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줄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요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석면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 자료 1페이지 하단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질환은 직업성 석면질환만이 아니라 환경성 노출로 인한 석면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보상과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산하에 석면피해 보상 업무와 예방·관리 대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면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석면피해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하여 위로금, 요양급여, 생활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석면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석면피해보상과 예방을 위해 석면 오염의 현황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석면에 관한 피해 보상과 예방·관리를 위한 석면 전문기관인 국립석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며, 석면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의사 등의 등록 대상 질환 신고를 의무화하고,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석면피해자와 사망자 등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질환이 진행 중이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자에게 요양급여와 생활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헌신·기여한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석면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이상 4건의 법률

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길** 지금부터 의사일정 10항부터 13항까지 4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인물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3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묶은 보고서를 위주로 하고, 함께 김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분에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피해보상법안,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권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없는 석면 관련 근로자와 비근로자로서 석면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 제도를 마련하려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보상 질병, 보상 대상자, 보상 지원의 내용, 주관 부처, 보상 업무의 담당기구, 보상 신청 절차 및 불복 절차, 보상 재원의 마련 방법, 석면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있어서 같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보상 질병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의원안은 제2조제1호에서 ‘중피종·석면폐·폐암·흉막비후 등 석면으로 인하여 기관지와 폐 등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보상 질병으로 하고 있고, 박준선 의원안은 제2조제1호에서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그 밖에 석면에 기인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권선택 의원안은 제2조제1호에서 ‘악성중피종·폐암·석면폐증 등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보상 질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악성중피종의 경우 3건의 제정안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폐암과 석면폐의 경우에는 양승조 의원안과 권선택 의원안에만 규정되어 있으

며, 양승조 의원안의 경우 흉막비후도 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안의 경우 악성중피종, 후두암, 폐암, 석면폐, 흉막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관련 질환을 보상 질병으로 하여 보상 질병의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모든 질병을 보상 질병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 범위, 석면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규명 가능성 여부, 재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질병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상 대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승조 의원안은 제2조제3호에서 ‘석면 관련 산업 종사자 또는 석면오염지역 거주자로서 지정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이 법 시행 후 20년 이내에 지정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지정질환으로 사망하였거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질환이 발병하였거나 그 외의 지정질환으로 의심되는 기관지·폐 관련 질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의원안은 안 제2조제2호에서 ‘석면 관련 사업 종사자 또는 석면오염지역 거주자로서 지정질환을 얻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 지정질환으로 사망한 자,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질환을 얻은 자, 그 밖의 지정질환으로 의심되는 기관지·폐 관련 질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준선 의원안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보상 질병을 얻게 된 자를 모두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고, 김상희 의원안 역시 직업성 노출 피해자와 환경성 노출 피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4건의 제정안 모두 직업성 석면피해자 이 외에 환경성 석면피해자도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양승조 의원안과 권선택 의원안의 경우 보상 대상자에 대한 범위 설정이 유사하나 양승조 의원안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20년 이내에 지정질환이 발생한 자’로 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인데 석면피해의 경우 잠복기간이 10~40년으로 매우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 시행 후 20년 이내에 지정질환이 발생한 자로 그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상지원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의원안의 경우 제11조에서 피해보상금, 의료비, 요양급여, 장제비 및 유족조위금을 보상 내용으로 하고 있고, 박준선 의원안의 경우 제5조에서 요양급여, 요양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을 보상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권선택 의원안의 경우 제41조에서 손실보상급여, 요양급여, 장의비, 유족급여를 보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안의 경우 위로금, 요양급여, 생활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를 보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건의 제정안 모두 의료비와 장의비를 보상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권선택 의원안의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요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안의 경우 석면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고, 박준선 의원안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요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며, 권선택 의원안의 경우 미취업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손실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의 경우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위로금을,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생활급여로 따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양승조 의원안의 피해보상금은 법문만으로는 어떠한 성격의 피해보상금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권선택 의원안이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급여는 석면피해자가 석면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의 보상이고 손실액 산정의 어려움,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가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관 부처 및 보상 업무 담당 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승조 의원안의 경우 제8조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면피해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석면피해자에 대한 판정을 하고 보상급여의 지급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박준선 의원안의 경우 환경부를 주관 부

처로 하되 제10조에서 석면피해구제기구를 설립하여 구제급여의 접수·심사·지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환경부에 설치된 석면피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의원안의 경우 환경부를 주관 부처로 하되 제13조에서 석면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석면피해보상기금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소속 석면피해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피해보상의 결정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안의 경우 환경부 산하에 설치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보상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도록 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상급여 지급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전담 기구를 두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나 현재는 석면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새로이 전담 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석면피해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석면피해자의 규모와 지원 수준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보상 신청 절차 및 불복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의원안의 경우 보상 신청에 대한 절차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안 제17조에서 보장기관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선 의원안의 경우 안 제12조에서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석면피해구제기구에 보상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권선택 의원안의 경우 안 제42조에서 석면피해보상기금공단에 피해자의 인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복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양승조 의원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처분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재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안의 경우 석면피해구제기구의 결

정에 불복하는 자는 구제기구에 설치된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에 설치된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재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의원안의 경우 석면피해보상기금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설치된 석면피해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에 설치된 석면피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재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다시 환경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 산하에 설치된 석면피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 절차의 경우 양승조 의원안의 경우 보상 신청 절차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불복 절차의 경우 양승조·박준선·권선택 의원안은 2단계의 불복 절차를 두어 충분한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승조 의원안의 경우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 제정안의 주목적이 산재보상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환경성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이므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보다는 실제로 석면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재원의 마련 방법입니다.

양승조 의원안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박준선 의원안과 권선택 의원안의 경우에는 석면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준선 의원안과 권선택 의원안의 경우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나 정부 출연금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정부 출연금 말고는 마땅히 기금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재원 마련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범위를 명시하

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준선 의원안의 경우 위의 재원 외에 석면광산, 석면공장, 그 밖에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사용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금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김상희 의원안의 경우 석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재원은 기금운용 수익금, 기금결산 잉여금, 정부·지방자치단체·사업주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출연금 및 기부금”이라는 안 제19조의 규정만으로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금재원의 출연을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원 가능한 다른 재원의 발굴, 사업주에 대한 출연금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인자 부담에 따라 석면 관련 사업자가 피해보상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이 기본적으로 보상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석면 관련 사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가 많아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 원칙의 기본 정신을 살리면서도 실질적으로 석면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석면피해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4건 법안에 대한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위 4건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정법률안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정법 규정에 따라서 차후에 공청회 개최와 그 공청회 개최 일자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협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공청회 개최와 또 차후 공청회 개최 일자에 대해서 나중에 협의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해서 심사한 법률안들에 대해

서 계속 심사 여부와 진행 절차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님을 비롯한 환경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委員長 秋美愛**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의 노동부 소관 법률안 심사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심사에서는 각 법률안을 개별적으로 상정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명이 같은 법률안과 개정내용이 유사한 법률안들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상정이 간사간에 협의가 다소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대체토론을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24건의 법률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을 청취하고, 대체토론은 다음 4월 임시국회 위원회 일정에서 계속 심사하자는 간사간의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14시50분)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민간기업 수준인 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인 3%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 부문이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2배수의 일반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원창희 전문위원입니다.

본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 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공익성이 강하고 민간기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 부칙에서는 이를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일부 3년간 추가 고용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법상 공공기관이 정부와 민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2%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장애인고용률이 민간기업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어서 정부 부문과 동일하게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어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3%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토록 하고, 그에 따른 추가발생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적용 후 3년간 증가된 부담금을 2분의 1을 감면해 주는 경우 통상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3년 정도면 3%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과 장애인 고용계획서 수립·제출 등에 이를 반영하고,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시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1990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도입하여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고용의무제도가 경증장애인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좀 더 강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개정안과 같이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시 경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보다 2배의 고용부담금 감면혜택이 있고, 경증장애인 2명 대신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법률적 효과는 동일하나 지불해야 할 임금은 반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사업주의 부담 감소와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금수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부담금과 임금 부담 감소에 따라 경증장애인의 신규고용 기피와 이미 고용된 경증장애인마저 해고시키는 등 경증장애인의 고용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의 운영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무고용률을 조정하는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고용기간 등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차등지급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장려금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고용기간, 장애정도, 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장려금 차등지급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다른 장려금과는 달리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기간의 제한 없이 지급되어 고용사정이 좋은 경증장애인까지 근속기간 전 기간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이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 정도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둘째,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1999년 58억 원 규모에서 2000년 장려금 단가 인상으로 2002년에는 818억으로 증가했고, 2004년 단가 인하로 2006년

860억 규모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2007년 1018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금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에 개정안과 같이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을 고용기간, 장애 정도, 성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함으로써 고용장려금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고용장려금을 고용기간에 따라 축소시키는 근거가 될 우려가 있고, 경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축소 지급하는 것은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증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약화에 따른 고용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간 “그밖에”라고 불특정하게 표현돼 있던 것을 목적이 동일한 지원금을 수급하는 자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제 적용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적용하되 견습근무 중인 사람, 공무원 임용예정자, 특정대상을 위한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제공된 일자리에 장애인고용의무제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건비를 일반 예산에서 지원받고 있으므로 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주체로서의 사업주, 상시근로자 산정을 위한 사업장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이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대표발의)(진영·송민순·이인기·원희룡·황영철·이상민·안상수·권영진·고승덕·정영희·홍일표·이범래 의원 발의)

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강승규·강석호·권영진·권택기·나경원·신상진·안형환·안효대·원희룡·이달곤·임동규·조해진·한선교 의원 발의)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58분)

○**委員長 秋美愛**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및 제17항 진영 의원과 강승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을 대표발의한 진영 의원과 강승규 의원이 사정이 있으셔서 서면으로 각각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원기간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기업 간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 간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먼저 진영 의원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3쪽을 보시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격상,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의 설치,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사회적기업의 날 제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1998년 경제위기 시 실업이 급증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태동하기 시작을 했으며 이후 2003년 노동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범정부 사업으로 정착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거치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만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그 대안으로서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7년 7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현재 154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노동부는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우선 먼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노동부장관 소속하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현행 노동부 차원에서 범정부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격상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과 배치되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5월 27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

원회 등과 함께 고용정책법상 고용정책심의회에 통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인증과 같이 세부적·전문적 업무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의 업무로 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6쪽,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1조의2는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사례는 선진 외국에서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외에 기업 또는 개인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의무적 부담금이나 특정사업 수익금 등의 재원이 없어 정부의 일반회계 출연금 이외에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기금설치가 오히려 정부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저해하여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설치에 이 법의 개정만 의해서만 할 수가 없으며 국가재정법 제5조의 별표 2를 개정하여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새로운 기금의 설치에 곤란한 상황이며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개정과 동시에 국가재정법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설치는 사회적기업의 증가추이 및 성장상황 또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 증가 추이와 재원의 안정적 조달방법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사회적기업 기부단체 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규정은 비과세·감면을 통합 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입법취지와 배치되어 개별법에 규정이 있어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없이는 세제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조세감면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동시에 개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의 날 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이제 육성 초기단계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사회적 기여도 역시 아직까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회적기업의 날 및 기념주년을 법제화하는 것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날 및 기념주년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관련 행사와 홍보 등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의 날을 제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사회적기업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8년 12월 현재 사회적기업의 인증신청기관은 총 451개소에 이르고 이 중 154개소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정부는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므로 매년 2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신규로 인증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사회적기업원을 설립하여 위탁업무, 사회적기업가 양성, 예비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경우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근로 등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가 확대되어 왔으나 단기·임시·저임금의 일자리라는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수익 창출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부는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등의 지원 인프라 구축, 모니터링·평가 등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정부와 민간단체를 통하여 지원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육성·발전시켜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사회적기업의 육성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한국사회적기업원을 설립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다면 보다 전문적·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있어서도 전문화와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사회적기업원의 설립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와 같이 한국사회적기업원을 설립할 경우 향후 5년간 425억 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발생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조직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이나 공기업 선진화 등의 정책기조에 배치되는 측면도 일부 있으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사회적기업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폐지입니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 및 그 전문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라는 장점에 의하여 계속 증가하여 왔습니다. 반면에 정부위원회의 설치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책임행정의 구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는 바 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하는 등 6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2개의 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위원회의 정비는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의사결정의 신속성, 책임행정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업무였던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자주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인증의 심사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기보다는 하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재량행위 투명화 방침에도 부합하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및 제3항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의 방법, 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의 무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도 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제출을 의무화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 경제위기 상황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나 다수의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이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도에 대해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할 경우 지자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지자체별로 처한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형식화 내지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의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시도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14분)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8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첫째,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검토의견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사업주가 자진신고·납부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징수하는 등 징수체계가 서로 달라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여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강화하여 미가입 사업장 발굴·보험료 정산 등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료 부과 기준의 변동으로 일부 기업

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부담자 간의 형평성 유지와 해당 기금의 수입 재원의 변화 등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 기준보수 도입 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사업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기준보수를 지역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준임금은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금액을 기초로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를 부과·징수합니다.

노동부는 임금 수준이 낮은 지역은 기준임금이 높아 사업주는 부과고지제도를 거부하고 적용 제외 신청을 많이 하고, 임금 수준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보험료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6년부터 지역별로 기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현행법 제3조에는 기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기준임금을 달리 정하는 데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제도 신설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공단 담당자는 제공 받은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지 못함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고의적 납부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 받은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토록 함으로써 제공된 금융거래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秋美愛**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19분)

○**委員長 秋美愛**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9항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다음은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고용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고용정책의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에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검토의견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용정책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적극적인 취업 노력 책무와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신설하고, 노동부 주관 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하며, 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된 고용 환경 및 선진국들의 일을 통한 복지 추세, 고용정책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 증대, 새정부 출범 이후 위원회 정비 방향, 고용서비스시장에 민간 부문 역할 필요성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용 관련 위원회의 기능 통합에 대한 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정부는 3개의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소관 16개 위원회 중 2개를 폐지하고, 위의 4개 위원회의 기능을 정책심의회로 통합하는 등 8개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정비 후에는 3개의 행정위원회를 포함 11개의 위원회가 존속하게 되어 각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책심의회로 통합되는 4개 위원회의 기능 중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업무였던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 비록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심사 기준은 자주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인증 심사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인증 심사 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하기보다는 하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재량행위 투명화 방침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심사 기준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근거 신설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 사회 양극화 확대, 청년실업 심화 등으로 고용지원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국가가 의무화하는 것은 향후 정책 결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임의조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정책의 분석·평가 신설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하여 거시경제정책 및 산업정책 등이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과 일자리 간의 영향 데이터 및 노하우를 축적·활용함으로써 유사 정책이 일자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영향평가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고 그 효과도 단기와 중장기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고용영향평가 관련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용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목적과 배경하에서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 하나만 갖고 이를 평가할 경우 당초의 정책 취지와 다르게 정부기관 및 지자체 간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평가비용만 낭비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노동부는 이러한 점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설계에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치밀한 연구와 외국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2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김우남·강성천·송훈석·조진형·박순자·정진섭·신상진·박민식·이명규·정해걸·정갑윤·의원 발의)

2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이경재·정갑윤·박종희·이계진·이명규·김태원·구본철·윤석용·허범도 의원 발의)

2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25분)

○委員長 秋美愛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및 제22항 이화수 의원과 이윤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화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和洙 議員 한나라당 안산 상록갑 이화수 의원입니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현행 직업안정법은 법인 또는 개인 사용자의 종업원이 동 법의 법률행위를 위반하였을 때 범죄행위가 담 여부나 지도·감독의 소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형사법의 근간인 책임주의에 반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해 책임

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되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면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형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는데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의사일정 제21항을 대표발의한 이윤성 의원님께서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미리 양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 제출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 부문에서 새로 출현하고 있는 모집 대행 등 다양한 양태의 고용서비스를 직업안정법의 영역에 포함하여 종합고용서비스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 개념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유료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인기업 간 직업소개 수수료를 자율화하고,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먼저 이화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50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양벌규정 적용 시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규정 적용 시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이 개정안 심사 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령상에 규정되어 있을 뿐 법적 근거가 미비한 국외 공급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근로자를 공급하는 공급사업주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근로자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노조법상 노조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하역노동자를 공급하는 향운노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로자 공급은 공급사업주와 공급근로자 간 지배관계 형성, 사업용 사업주와 공급근로자 간 지휘명령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 고용계약관계 형성,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 지휘명령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 파견과 구별됩니다.

현행법 제33조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대상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 및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을 뿐 근로자공급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33조는 제1항에서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및 제3항에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허가 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없는 시행령 규정사항을 법에 상향 규정하여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문의 배열에 차이가 있으며 안 제33조제2항과 대비

되는 정부안 제33조제5항의 경우 허가기준을 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 제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요, 검토의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에 따라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가 급격히 확대되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통해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함께 정부의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에 따라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새롭게 민간부문에서 출현하고 있는 직업소개와 모집이 결합한 형태의 직업소개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서비스를 규율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의 개념을 확대하고 직업소개에 따른 요금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영역의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직업소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입니다.

개정안은 직업소개의 정의를 현행 고용계약의 알선 외에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그 개념을 확대하여 최근 민간부문에서 고급인력을 전문적으로 스카우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헤드헌터 등이 이 법의 영역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헤드헌터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자를 소개하기 위하여 응모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해당 응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간고용서비스의 고도화 및 다양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요금상한제 완화에 대한 건입니다.

개정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를 하고

구직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되 구인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할 사항이나 그간 시행령에 규정하여 왔으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헤드헌팅 업체 등의 업체가 전문화·대형화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업자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구직자에 대한 요금수수의 원칙적 금지 이외에는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인자 간의 요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전문적인 대형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육성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직업상담원 의무고용의 임의규정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동거하는 가족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거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는 별도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직업소개업소의 입장에서는 설립에 부담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소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민간고용서비스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직업상담원의 고용 조건을 완화할 경우에 직업소개업소의 전문화·대형화 유도라는 법개정의 기본 취지의 달성보다는 영세업소의 난립이라는 부작용을 촉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근로자공급사업의 법률상 근거 보완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관한 요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 요건에 관한 사항,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여 운영해 온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 공급근로자 관리, 국외 공급연예인의 심사·선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치주의 구현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秋美愛**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25.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39분)

○**委員長 秋美愛**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민들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장관님, 나머지 2건 더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3개 법률안이 같은 내용이라 지금 3개를 동시에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동시에 하신 겁니까? 일괄해서 같은 내용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영희** 예.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건이 공통적인 사항들이라서 공통적 사항을 1건으로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공통으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과 양벌규정의 개정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행정형벌 과태료 전환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간섭할 경우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기숙사 임원은 해고,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 대표와 달리 기숙사의 안전과 보건, 건설물·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어서 사용자의 선거 개입 유인이 적고 만약 사용자의 선거 개입이 있는 경우 오히려 과태료가 행정형벌과 달리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임원선거 개입의 적발 및 처벌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 조항은 1960~1970년대에 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 미혼 근로자의 기숙사 생활 보호를 위해 만든 규정으로 사업장 부속 기숙사가 거의 없는 현재는 당시와 같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워 최근 3년간 동 조항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다음의 양벌규정 적용 대상 명확화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법 제115조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을 '제107조, 제109조~제111조,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으로 명확히 하고 현행법 제115조의 단서를 신설하여 양벌규정 적용 시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규정이 벌칙조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한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를 명문화하는 것은 지난 2007년 11월 29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2건의 정부 제출안도 동일하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이경재·정갑윤·구본철·김태원·김효재·박준선·백성운·이달곤·이화수·허범도 의원 발의)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이윤성·이경재·정갑윤·구본철·김태원·김효재·박준선·백성운·이달곤·이화수·허범도 의원 발의)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정해걸·박대해·진성호·김성태·강성천·정갑윤·안형환·홍장표·송훈석·김재운·윤석용·박준선·조원진·원희목·김태원·이경재·조해진·정진섭 의원 발의)

(15시44분)

○**委員長 秋美愛** 다음은 이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6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8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과 제27항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성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화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和洙 議員**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안전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을 충족하는 자율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검사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11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성, 경험, 기술력 등을 보유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어 부실검사에 대한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2년간 유예를 할 경우 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 취업 등이 악화되고 전문성 또한 저하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에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시행시기를 안전검사와 동일하게 앞당김으로써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검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전문 검사기관의 경영과 관련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및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먼저 이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2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를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폐지하려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는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관련 국장, 학계 및 기업계 등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가 통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학계 및 기업계 위촉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보상의 연계 수행이 필수적이어서 두 위원회를 통합하는 경우 그동안 예방과 보상을 분리하여 심의하던 것을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관련 근로자 보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위원 등 조직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등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 간의 협력 체제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련 부처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등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은 이화수 의원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을 삭제하여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시행 시기를 안전검사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검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전문 검사기관 및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율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성능검사를 하는 방법에는 첫째,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게 하거나 두 번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경우에 사업주 주관 성능검사와 지정 검사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검사 모두를 안전검사로 볼 수 있게 되어 사업주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제2항은 제17대 국회에서 동 법률안의 심사 시 안전검사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동시에 시행하려는 당초 정부안에 대해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그 시행을 2~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에서 정기검사를 해 온 크레인 등 5종은 다른 기종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해·위험하기 때문에 자율검사프로그램은 종전 자체 검사만을 수용하던 기계·기구(7종)에 대해 우선 시행하여 그 신뢰성을 검증한 후 2011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관련 사항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의 입법 연혁, 개정안의 입법 취지, 사업주 주관의 자율검사의 전면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실검사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프로그램의 전면 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시53분)

○**委員長 秋美愛**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9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영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과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지정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핵심적인 사항만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재의료원 폐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산재의료원 설립 근거 조항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산재의료원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이 통합하는 경우 우선 사업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운영자로서 병원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산재의료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산재환자에 대한 각종 시범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며 보상과 치료의 연계에 따른 통합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민영 병원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집중재활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산재환자의 조기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소속 병원들이 기관 단위의 존립 및 발전에 중점을 두지 않고 산재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산재의료원은 보다 많은 진료를 통해 진료 수입을 가능한 증대시키려는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가진 기관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진료비 지출 등 산재기금의 지출을 가능한 줄이려는 심사 기능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에서 두 기관은 상충된 동기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이 통합 과정에서 적절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산재의료원이 현행법에 따라 수행하던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등은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정관에 이를 반영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산재전문병원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른 산재의료원의 산재 전문화, 재활 특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30.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김영진·이진삼·이범래·김태원·김동철·원희룡·구본철·김소남·정병국·박종희·신상진·김희철·이달곤·정양석·김재운·박상돈·이화수·김충조·강창일·신학용·조진혁·장광근·이성현·이윤성·조영택·윤상현·고승덕·강명순·최인기·강성천·조진형 의원 발의)

3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최철국·김재균·강창일·김영진·강기정·양승조·김춘진·우윤근·주승용·전현희·이광재·백원우·최규성 의원 발의)

32.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강창일·김상희·김우남·김재균·김창수·박지원·송민순·안민석·양승조·원혜영·이광재·이미경·이용경·이용섭·조배숙·천정배·최문순·홍희덕 의원 발의)

33.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홍희덕·유성엽·김재윤·강기갑·곽정숙·이정희·권영길·최문순·김성수·원혜영·송훈석 의원 발의)

34.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시57분)

○委員長 秋美愛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3항까지 홍일표 의원, 최철국 의원, 김재윤 의원, 홍희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34항 정부가 제출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을 대표발의한 홍일표 의원과 최철국 의원은 서면으로 각각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김재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의원 민주당 김재윤 의원입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수가 대폭 감소하여 청년실업률이 평균실업률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어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의무화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의 유효 기간을 삭제하였고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지방공기업도 청년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의 제명을 청년고용촉진법으로 변경하도록 하였고, 정부 및 지자체, 기업, 학교 등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고용 인프라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고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덕 의원**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오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실업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실업자는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생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할 경우 100만 명을 넘어가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존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가지

고 있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시행과 노력을 촉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층 3% 신규채용 권고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2년 연속 미달기관이 29개, 3년 연속 미달기관이 18개, 4년 연속 미달기관도 13개에 달하고 있어 권고라는 조치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들이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보건,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의원 발의 법률안 4건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의원 대표발의 한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제명 변경 및 유효기간 삭제 사항입니다.

법제명 변경과 관련하여 정부 및 홍희덕 의원안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김재윤 의원안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홍일표 의원 및 정부안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있으며, 최철국 의원 및 김재윤 의원안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제명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법명이 고용을 유인 또는 창출하는 적극적인 개념보다 실업해소라는 소극적 의미가 강하고, 단순한 청년실업자 대책만이 아니라 청년비경제활동인구를 고용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개정안이 담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명의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통 고용정책상 고용촉진의 대상은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로 청년을 고용 촉진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법 최초 제정 취지가 일시적 경기 악화로 인한 청년실업의 해소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효기간 종료 후 동법의 주요내용을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최철국 의원 및 김재윤 의원안과 같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면 청년실업 대책 및 청년고용 촉진 정책을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현행법의 청년실업 대책 중 공공기관 채용의무 노력 부과 등과 같이 한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협력 체계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홍일표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학·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협력사업 공동개발·시행을 규정하고, 김재윤 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학교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공동개발·시행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희덕 의원안은 정부의 학교,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공동개발·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안은 정부의 학교 및 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의 공동개발·시행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각 안에 따른 사회 각 부문의 협력 체계 구축은 체계적인 청년고용 정책의 실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다만, 홍일표 의원안은 협력 체계 구축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국가를 제외한다는 단점이 있고, 홍희덕 의원안과 정부안은 협력 체계 구축의무를 정부에 부여하여 그 부여 대상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 체계 구축의무 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실업 대책 관련 위원회 설치입니다.

최철국 의원안은 노동부에 청년실업해소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김재윤 의원안은 노동부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대책 관련 위원회를 노동부에 설치할 경우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부처 간 조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정 시 대통령 소속하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두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을 담당하도록 하다가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 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2월 29일 법 개정으로 이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가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고용 관련 중앙행정기관 차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고용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이 위원회를 활용할 경우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노동 관련 정부위원회의 경우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되는 추세에 있고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폐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고용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홍일표 의원안은 채용기관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최철국 의원안은 채용노력의무를 채용의무로 변경하고 있음.

김재윤 의원안은 채용기관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동시에 채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홍희덕 의원안은 100분의 5 이상으로 채용 비율의 기준을 상향하면서 채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는 참조해 주시고요.

악화일로에 있는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고용의무화 추진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으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존 재직자의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악

화 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공기업의 경영 여건이 국가 공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경영 성과도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의무 부과 및 적용 기관에 지방 공기업 포함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직장취업체험 기회 제공,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홍희덕 의원 안 및 정부안은 직장취업체험 기회 제공,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김재윤 의원 안은 취업 애로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행정인턴 및 청년인턴제를 통해 청년의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직장체험 확대가 고용 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직장취업체험 기회 제공 규정 신설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학력, 직업기술의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애로 청년층은 취업 가능성 및 취업 후 근로조건 등이 낮은 가능성이 큰 계층으로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청년직업상담원 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재윤 의원 안은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 직업상담원을 양성하여 시군구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직업상담원과 구별되는 청년만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상담원을 양성 배치하여 청년취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청년직업상담원을 별도로 양성하여 시군구에 배치할 경우 기존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박대해·박은수·전현희·문학진·변재일·이석현·양승조·안민석·김영진·최영희·천정배·송영길·홍희덕·강기정·이용경·장세환·김재윤·안규백·이성남·이춘석·원혜영·이정희·최문순 의원 발의)

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박대해·최구식·유재중·홍장표·안상수·강성천·손숙미·이달곤·홍희덕·박민식·서상기·황우여·김정훈·허태열·정영희·한선교 의원 발의)

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6시12분)

○**委員長 秋美愛**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36항, 김상희 의원과 박대해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하고, 의사일정 제37항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금지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 기회 확보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저임금의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제하는 제도적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국인근로자 우선 고용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되 이에 따른 절차적 규제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취업가능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사용자에게는 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여서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적법한

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후 재취업 시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직업안정기관은 고용허가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법무부장관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구직자 명부 및 구인명부를 작성 관리하여 근로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인력 수급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동 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인력 수요에 맞춰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근로 단절과 재입국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됨으로써 고용 안정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도 보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 의원** 박대해 의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과거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 이탈, 임금체불, 송출비리 등의 문제로 사회적 폐해가 컸던 제도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하여 기존의 50~60%에 육박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률을 3.3%로 낮추고, 임금체불률도 36.8%에서 9%로 대폭 낮추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후 지난 2007년 1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제도를 단일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현행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가 나눠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고용 대행업무를 업종별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로 일원화시킬 계획을 세우

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좋은 취지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각종 부작용을 낳아 폐지된 산업연수생제도를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사회 각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제도 부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외국인고용 대행업무를 민간단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인상,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지연은 물론이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중개인의 불법적 개입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지위 향상, 고용 촉진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사용자의 편의를 개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법 제9조2항을 개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대행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둘째, 제28조가 규정한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도록 한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물론 복잡한 대행업무에서 과생되는 심각한 부작용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의원발의의 법률안 2건에 대해서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 외

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제한기간 폐지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취업을 하고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여 5년을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경우 단순기능인력의 정주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될 경우 국적법상 국적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08년 11월에 정부가 제출한 이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우수근로자의 재입국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개월 출국요건을 폐지하고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재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의 경우 총 취업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며 사업자의 재고용 요청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만 기간을 연장하게 됨으로써 정주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완화 및 자율 구직 허용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자 변경 시 사유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율구직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사유에 관계 없이 자유화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 및 임금 조건이 나은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인력이 부족한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울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당초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사업장 변경이 매년 7만 7000건 정도 발생하여 일부에서는 사업장 변경요건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현행 사업장 변경사유 이외에 “사용자의 현저하게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직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율구직을 허용하면 인력 중개 브로커의 개입으로 불법취업 및 채용비리 등 과거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의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박대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제9조제2항에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 제16조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대행기관을 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위임규정은 법에서 기준을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아니고,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대통령령 제16조에서도 인력공단을 대행기관으로 규정하는 것 외에 다른 규정이 없는바, 이 규정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느냐, 법에서 직접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입법 재량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위탁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담케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들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송출국가에서의 한국어시험부터 국내에 체류하다 귀국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각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업무를 효율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및 대행기관에 적절하게 분담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전문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원스톱 시스템으로 고용허가 신청 및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편리하게 구인 신청, 고용허가 신청 및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로 인한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채용이 이루어져 중소기업

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므로 노동부는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여 대행으로 발생하는 불편함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과 같이 제28조를 개정할 경우 대통령령 제31조제5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전산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을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까지 효력을 잃게 되므로 고용정보원에 대한 위탁 근거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秋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환경부 소관의 법률 1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노동부 소관의 법률안 모두 2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대체토론까지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위원회가 소관 법률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 오늘 상정시키지 못한 법률안과 또 오늘 대체토론까지 나아가지 못한 법률안들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추후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4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재보궐선거를 비롯해서 정치 일정이 빠듯합니다마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경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야 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그러한 국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도 있는 고견을 마련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동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委員長 秋美愛** 예.

○**김재윤 위원** 제가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노사정이 힘을 모아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내년부터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겠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도

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또 하나의 갈등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관님의 철학이라든가 또 보다 바람직한 노동정책의 추진은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의 시점은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고, 또 어려운 위기상황을 정부와 노동계와 그리고 기업이 힘을 모아 가지고 극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은 다소 수면에 가라앉히고 오직 노동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예,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어쨌든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폐지가 되고 법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그 법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것이 국회지 않습니까? 비정규직법도 마찬가지고, 복수노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전임자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생각이 일단 그것을 다뤄야 되는 의무는 국회에 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국회의 해야 될 의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만큼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委員長 秋美愛** 오늘 회의를 하는 동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님과 간부 직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이두아 위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강성천	권선택	김상희	김재윤
박대해	박준선	이두아	이화수
조원진	추미애	홍희덕	

○**청가 위원(1인)**

조해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길	원창희
전문위원	이만익	이병욱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이만익	의정호
차관	이병욱	문정호
기획조정실장	김지태	김지태
자연보전국장	홍준석	홍준석
환경전략실장	윤승준	윤승준
물환경정책국장	김종천	김종천
상하수도정책관	유복환	유복환
감사관	정희석	정희석
대변인		
노동부		
장관	이영희	이영희
기획조정실장	송영중	송영중
고용정책실장	신영철	신영철
근로기준국장	이기권	이기권
산업안전보건국장	정현욱	정현욱
정책기획관	정철균	정철균
고용평등정책관	허원용	허원용
고용서비스기획관	이우룡	이우룡
국제협력관	이성기	이성기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홍준표	이두아	한나라당	2009.3.6

○의안 회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2009. 2. 24 홍희덕·유원일·최문순·김재운·강창일·곽정숙·강기갑·이정희·송훈석·권영길 의원 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09. 2. 24 추미애·김희철·강창일·이한성·유원일·최문순·조원진·홍재형·김성곤·김효석·김재운·유선호·권선택·유성엽·배영식·주성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5일 회부됨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09. 2. 25 김상희·김춘진·송영길·양승조·이시종·최문순·박은수·변재일·김성곤·강창일·전현희·김영록 의원 발의)

2월 26일 회부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
 (2009. 2. 26 송훈석·정갑윤·최옥철·허천·이용삼·이계진·최연희·이광재·황영철·김중률 의원 발의)

2월 27일 회부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09. 3. 3 이상민·김창수·심대평·류근찬·김용구·박선영·이재선·이명수·노영민·정하균·권선택 의원 발의)

3월 4일 회부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09. 3. 4 김정훈·박민식·현기환·유기준·장제원·박대해·김세연·유재중·정의화·허태열 의원 발의)

3월 5일 회부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
 (2009. 3. 5 강명순·고승덕·이한성·박기춘·안상수·김태원·유원일·김성수·임영호·남경필·원희목·우제창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 의원 대표발의)
 (2009. 3. 5 강명순·고승덕·이한성·안상수·김태원·유원일·김성수·임영호·이정선·남경필·원희목·우제창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6일 회부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09. 3. 6 임동규·안경률·원희목·김태환·이명규·강석호·손범규·양정례·박순자·손숙미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09. 3. 6 김소남·양정례·임두성·김옥이·박대해·김성수·고승덕·이정선·원희목·손숙미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9일 회부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
 (2009. 3. 10 이화수·노철래·정갑윤·박민식·

송훈석 · 박대해 · 김우남 · 이명규 · 정진섭 ·
박순자 · 신상진 · 이춘식 · 김영우 · 강성천 ·
박준선 의원 발의)

3월 12일 회부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
발의)

(2009. 3. 13 김정권 · 최철국 · 김학송 · 이주영 ·
김성수 · 이한성 · 권경석 · 안홍준 · 신성범 ·
윤영 · 송광호 · 김성태 · 이은재 의원 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2009. 3. 13 김상희 · 김우남 · 김재균 · 양승조 ·
김진표 · 김효석 · 김재윤 · 유원일 · 홍희덕 ·
전현희 · 신낙균 · 박은수 · 강창일 · 최문순 ·
이광재 · 김춘진 · 임영호 의원 발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09. 3. 13 김상희 · 김우남 · 김재균 · 양승조 ·
김진표 · 김효석 · 김재윤 · 유원일 · 홍희덕 ·
전현희 · 신낙균 · 박은수 · 강창일 · 최문순 ·
이광재 · 김춘진 · 임영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6일 회부됨

물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9. 3. 16 강창일 · 홍재형 · 양승조 · 김우남 ·
이낙연 · 김상희 · 박기춘 · 이종걸 · 주승용 ·
김영진 · 강기정 · 김성순 의원 발의)

3월 17일 회부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2009. 3. 18 이윤성 · 서청원 · 문희상 · 김성곤 ·
안경률 · 정갑윤 · 신상진 · 권택기 · 김옥이 ·
김효재 · 박대해 · 박준선 · 안규백 · 윤상현 ·
임동규 의원 발의)

3월 19일 회부됨

석면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09. 3. 20 김상희 · 양승조 · 김재윤 · 김춘진 ·
유원일 · 홍희덕 · 최문순 · 홍재형 · 박은수 ·
노영민 · 강기정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
표발의)

(2009. 3. 20 임두성 · 김소남 · 이성현 · 양정래 ·
유성엽 · 임동규 · 윤석용 · 정해걸 · 여상규 ·
이인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3일 회부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9. 3. 23 이명규 · 손범규 · 김태원 · 김성곤 ·
유성엽 · 김충환 · 이명수 · 임동규 · 송영선 ·
유기준 · 양정래 · 노철래 · 임영호 · 김성수 ·
신상진 · 정영희 · 박준선 · 안상수 · 이학재 ·
김소남 · 이정선 · 김정권 · 한선교 · 안홍준 ·
이화수 · 김효재 · 우제창 · 배영식 · 안효대 ·
황영철 · 김영진 의원 발의)

3월 2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등에 관한 법률
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2009. 3. 3 임두성 · 손숙미 · 김무성 · 나성린 ·
윤두환 · 김옥이 · 한선교 · 윤영 · 이성현 ·
이경재 · 권영세 의원 발의)

3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